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제1호의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판매대상 및 지역별 주간, 월간 평균 판매가격'으로 수정하고,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판매가격'을 '개별 석유정제업자의 판매대상 및 지역별 주간, 월간 판매가격'으로 수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고 대상자	보고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보고내용	보고 방법	보고 기한
1. 석유정제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다. 경유 (자동차용)	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지역별(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 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전자 보고	매주 목요일
2. 석유 정제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다.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 (A·B·C중유, 황 함량별) 마. 부생연료유 (1호, 2호)	지난 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지역별(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분), 판매대상별 [주유소, 대리점(일반·용제), 판매소(일반·용제·부생연료유)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	전자 보고	매월 23일

	바. 아스팔트 사. 용제(1호)	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 량, 내수매출액 및 내 수매출단가		
3. 석유수출입업 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다.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 (A·B·C중유, 황 함량별) 마. 부생연료유 (1호, 2호) 바. 아스팔트 사. 용제(1호)	지난 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 유소, 대리점(일반·용 제), 판매소(일반·용제 ·부생연료유) 및 석유 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로 구분한다] 내수판매 량, 내수매출액 및 내 수매출단가		
4. 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다.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 (A·B·C 중유, 황함량별) 마. 용제(1호) 바. 부생연료유(1호, 2호)	지난 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 유소, 일반대리점, 판 매소(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 매처로 구분한다] 판매 량, 매출액 및 매출단 가	전자 보고	매월 23일
5. 주유소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다. 경유 (자동차용)	1) 석유제품 종류별 정 상 판매가격 2)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	전자 보고 또는 서면 보고	판매 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 시간 이내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개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공개내용	공개 시기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 경유(자동차용)	석유정제업자가 지난 주에 일반대리점, 주 유소, 일반판매소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 류별, 판매대상별 내 수판매량의 평균 판매 가격 및 지난주에 주 유소에 판매한 석유제	매주 금요일

석유정제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제42조 의2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 자만 해당한다)		품의 종류별, 지역별 (지방자치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구분)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 격 (석유정제업자의 직영 사업장과 석유판매업 자 외의 판매처에 판 매한 물량은 제외한 다)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아스팔트 용제(용제1호)	석유정제업자가 지난 달에 대리점(일반·용 제), 주유소, 판매소 (일반·용제) 및 석유 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 매가격 및 지난달에 주유소에 판매한 석유 제품의 종류별, 지역 별(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구 분) 판매량의 평균 판 매가격	매월 26일
석유정제업자별 평균 판매가격 (제42조의2 제3항제1호 단서에 해 당하는 석유정제업자 만 해당한다)			
석유수출입업자의 전 체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아스팔트 용제(용제1호)	석유수출입업자가 지 난달에 대리점(일반· 용제), 주유소, 판매소 (일반·용제) 및 석유 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석유수출입업자별 평 균 판매가격(제42조의 2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수출입 업자만 해당한다)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	일반대리점이 지난달에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	매월 26일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 류별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주유소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	주유소가 전일에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 제품의 종류별 판매량 의 평균 판매가격	매일
주유소별 판매가격	경유(자동차용)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 격 및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수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석유정제업자 :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석유정제업자 :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판매대상 및 지역별 주간,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개별 석유정제업자의 판매대상 및 지역별 주간, 월간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별표 4.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 <table><tr><th>보고대상자</th><th>보고대상 석유제품의 종류</th><th>보고내용</th><th>보고방법</th><th>보고기한</th></tr><tr><td>1. 석유정제업자</td><td>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td><td>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 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td><td>전자보고</td><td>매주목요일</td></tr><tr><td>2</td><td>가. 자동차용</td><td>지난 달의 석유</td><td>전자</td><td>매월</td></tr></table>	보고대상자	보고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보고내용	보고방법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 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전자보고	매주목요일	2	가. 자동차용	지난 달의 석유	전자	매월	별표 4.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 <table><tr><th>보고대상자</th><th>보고대상 석유제품의 종류</th><th>보고내용</th><th>보고방법</th><th>보고기한</th></tr><tr><td>1. 석유정제업자</td><td>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td><td>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지역별(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 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td><td>전자보고</td><td>매주목요일</td></tr><tr><td>2</td><td>가. 자동차용</td><td>지난 달의 석유</td><td>전자</td><td>매월</td></tr></table>	보고대상자	보고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보고내용	보고방법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지역별(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분) ,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 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전자보고	매주목요일	2	가. 자동차용	지난 달의 석유	전자	매월
보고대상자	보고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보고내용	보고방법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 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전자보고	매주목요일																											
2	가. 자동차용	지난 달의 석유	전자	매월																											
보고대상자	보고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보고내용	보고방법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지역별(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분) ,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 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전자보고	매주목요일																											
2	가. 자동차용	지난 달의 석유	전자	매월																											

석유 정제 업자 석유 수출 입업 자 및 부산 물인 석유 제품 생산 판매 업자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 (A・B・C 중유, 황함 량별) 마. 부생연료유 (1호, 2호) 바. 아스팔트 사. 용제(1호)	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 유소, 대리점 (일반・용제), 판매소(일반・ 용제・부생연 료유) 및 석유 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 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보고	23일	
	3. 석유 수출 입업 자 및 부산 물인 석유 제품 생산 판매 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 (A・B・C 중유, 황함 량별) 마. 부생연료유 (1호, 2호) 바. 아스팔트 사. 용제(1호)	지난 달의 석유 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 유소, 대리점 (일반・용제), 판매소(일반・ 용제・부생연 료유) 및 석유 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 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4. 일반 대리 점 용제 대리 점 및 부생 연료 유판 매소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 (A・B・C 중유, 황 함량별) 마. 용제(1호) 바. 부생연료유 (1호, 2호)	지난 달의 석유제 품의 종류별 판매 대상별주유소, 일 반대리점 판매소 (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 대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전자 보고	매월 23일
4.	가. 자동차용	1) 석유제품 종류	전자	판매	

석유 정제 업자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 (A・B・C 중유, 황함 량별) 마. 부생연료유 (1호, 2호) 바. 아스팔트 사. 용제(1호)	제품의 종류별, 지역별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구분), 판 매대상별[주유 소, 대리점(일 반・용제), 판 매소(일반・용 제・부생연료 유) 및 석유판 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 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보고	23일	
	3. 석유 수출 입업 자 및 부산 물인 석유 제품 생산 판매 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 (A・B・C 중유, 황함 량별) 마. 부생연료유 (1호, 2호) 바. 아스팔트 사. 용제(1호)	지난 달의 석유 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 유소, 대리점 (일반・용제), 판매소(일반・ 용제・부생연 료유) 및 석유 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 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4. 일반 대리 점 용제 대리 점 및 부생 연료 유판 매소	가.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 (A・B・C 중유, 황 함량별) 마. 용제(1호) 바. 부생연료유 (1호, 2호)	지난 달의 석유제 품의 종류별 판매 대상별주유소, 일 반대리점 판매소 (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 대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전자 보고	매월 23일
5. 주유	가. 자동차용 휘발유	1) 석유제품 종류 별 정상 판매가	전자 보고	판매 가격	

주유소	휘발유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별 정상 판매가 격 2)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보고 또는 서면 보고	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 간 이내
-----	--	-------------------------------------	----------------------	---

소	(1호, 2호) 나. 등유 (1호, 2호) 다. 경유 (자동차용)	격 2)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또는 서면 보고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 간 이내
---	---	-------------------------	----------------	---------------------------------------

별표 5.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공개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공개내용	공개 시기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석유정제업자가 지난해에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석유정제업자의 직영 사업장과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물량은 제외한다)	매주 금요일
석유정제업자별 평균 판매가격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아스팔트 용제(용제1호)	석유정제업자가 지난해에 대리점(일반·용제), 주유소, 판매소(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석유수출입업자가 지난해에 대리점(일반·용제), 주유소, 판	매월 26일

별표 5.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공개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공개내용	공개 시기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 (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석유정제업자가 지난해에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및 지난해에 주유소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지역별(지방자치법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분)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석유정제업자의 직영 사업장과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물량은 제외한다)	매주 금요일
석유정제업자별 평균 판매가격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 (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아스팔트 용제(용제1호)	석유정제업자가 지난해에 대리점(일반·용제), 주유소, 판매소(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및 지난해에 주유소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지역별(지방자치	매월 26일
석유정제업자별 평균 판매가격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정제			

석유평가업자별 평균 판매가격 및 석유수출입 업자별 평균 판 매가격(제42조 의2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 는 석유평가업 자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 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마소(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 의 종류별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일반대리점이 지 난달에 일반대리 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및 석유 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 별 판매량의 평 균 판매가격	매월 26일		
주유소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용 휘발 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주유소가 전일에 주유소 및 석유 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 별 판매량의 평 균 판매가격	매일		
주유소별 판매가격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 및 농 업용 면세유 판 매가격	수시		
업자만 해당한다)					
석유수출입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아스팔트 용제(용제1호)	석유수출입업자 가 지난달에 대 리점(일반·용 제), 주유소, 판 매소(일반·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 의 종류별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석유수출입업자 별 평균 판매가 격(제42조의2제3 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수 출입업자만 해당 한다)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기존과 동일	매월 26일	
주유소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기존과 동일	매일	
주유소별 판매가격			기존과 동일	수시	